E - 110 - 2011

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용진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ㅇ 제정경과

- 2005년 11월 KOSHA Code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05년 12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# ㅇ 관련규격

- 미국 API MPMS 3.6 : Measurement of liquid hydrocarons by hybrid tank measurement systems
- 영국 BS 6739 : Code of practice for instrumentation in process control systems installation design and practice
- API RECOMMENDED PRACTICE 551 (1993)
- Instrument Engineers Handbook (Bela G. Liptak, 1982)
- Applied Instrumenta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 (W. G. Andrew and H. B. Williams, 1979)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(계측장치 등의 설치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액위 계측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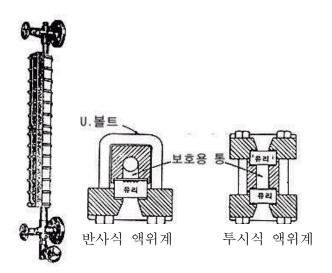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73조(계측 장치 등의 설치)의 규정에 의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액위 계측장치 설 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액위 계측장치(Level instrument)"라 함은 용기 등의 내·외부에 설치되어 용기 내부 액위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, 여기에는 관 유리액위계, 외장 유리액위계, 자기 액위계, 변위 전송기, 차압 전송기, 방사선 전송기, 초 음파 전송기, 정전용량 액위 전송기, 액위 스위치 등이 있다.
  - (나) "스탠드 파이프(Stand pipe)"라 함은 액위 계측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용기 등에 설치하는 보조배관을 말한다.
  - (다) "관 유리액위계(Tubular gage glasses)"라 함은 용기의 옆면에 병렬 파이프 형식의 투명관을 설치하여 용기내부의 액위를 지시하는 계기를 말한다.
  - (라) "외장 유리액위계(Armored gage glasses)"라 함은 <그림 1>과 같이 액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평면 유리를 금속보호대로 보호하도록 한 액위계를 말하며 투시식(Transparent type) 과 반사식(Reflex type) 이 있다.



<그림 1> 외장 유리액위계

- (마) "자기(Magnetic) 액위계"라 함은 용기 옆면에 파이프를 병렬로 설치하여 내부의 자석 부자와 표시기의 자성작용을 이용하여 용기내부의 액위를 지시하는 계기를 말한다.
- (바) "액위 전송기(Level transmitter)"라 함은 전기식과 공기식의 전송신호 방식을 사용하여 액위 전송을 하는 것을 말하며, 변위·차압·방사선·초음파·정전용량· 방사주파수와 같이 다양한 측정원리를 이용한다.
- (사) "변위 전송기(Displacement transmitter)"라 함은 원통 모양의 디스플레이서와 힘 검출기가 조합된 디스플레이서에 걸리는 부력을 이용하여 액위를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.
- (아) "차압 전송기(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)"라 함은 용기에 설치된 액위측 정 요소 사이에 생긴 압력차를 이용하여 액위를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.
- (자) "방사선 액위 전송기(Nuclear level transmitter)"라 함은 용기내부에 방사선을 주사하여 측정한 측정치를 통해 액위를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.
- (차) "초음파 액위 전송기(Ultrasonic level transmitter)"라 함은 용기에 설치된 초음파 송·수신기에서 나온 액위 반사파의 시간 측정을 통해 액위를 측정하는
- (카) "정전용량 액위 전송기(Capacitance level transmitter)"라 함은 동심 원통의 전 극 사이에 측정액을 넣고 그 액의 변화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로 액위를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.
- (파) "액위 스위치(Level switch)"라 함은 높은 (High) 또는 낮은 (Low) 액위 경보신 호를 나타내기 위해 액면 위에 있는 부표의 위치를 측정하는 계기를 말한다.

E - 110 - 2011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액위 계측장치의 사용 시 유의사항

액위 계측장치는 그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따라 사용한다.

- (1) 모든 액위 계측장치는 지상, 승강대, 통로, 고정사다리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 계기 아래쪽 지역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할 때에는 유지 보수를 위해 이동 승강대 사용도 무방하다.
- (2) 외부 장착형 액위 계측장치는 교정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.
- (3) 내부 장착형 액위 계측장치는 외장 액위 계측장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유지보수 를 위해 공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.
- (4) 제어밸브에 의해 조절되는 유체 액위, 액위 지시계, 리시버압력게이지 등은 필요 시 확인하면서 수동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어밸브의 설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.
- (5) 액위 계측장치의 현장 지시계는 운전통로에서 볼 수 있도록 용기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(6) 액위 계측장치는 용기에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, 배관내의 유체 속도가 0.6 m/s 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정 배관이나 노즐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
- (7) 계기의 연결과 파이프간의 연결 설치는 포켓이나 트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8) 포켓을 피할 수 없는 곳에는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 배수 밸브의 최소 권장 사이즈는 DN20 /NPS 3/4 이다.
- (9) 게이지 종류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기(게이지 제어기 또는 게이지 경보 스위치)를 설치할 때에는 용기의 연결노즐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E - 110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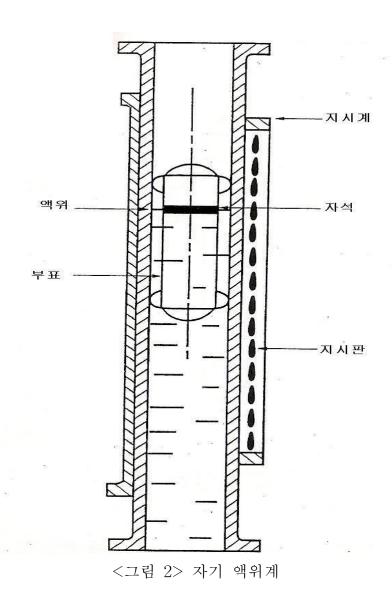
- (10) 차단밸브는 보통 용기노즐과 스탠드파이프사이에 설치한다.
  - (가) 차단밸브는 용기에 직접 연결하거나 스탠드파이프에 각각 따로 설치한다.
  - (나) 차단밸브를 스탠드파이프에 설치할 때에는 연결사이즈를 최소 DN20 /NPS 3/4 로 하여야 한다.
  - (다) 차단밸브를 플랜지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에는 연결사이즈를 최소 DN25 /NPS 1로 하여야 한다.
  - (라) 차단밸브를 니플(Nipple)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에는 연결사이즈를 최소 DN20 /NPS 3/4 로 하여야 한다.
  - (마) 용기와 차단밸브사이의 피팅류나 파이프는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무거운 액위 계측장치를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계기 및 실포트(Seal pot)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여 자체 중량에 의한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. 열 팽창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곳에는 옵셋(Offset) 또는 팽창배관루프 (Expansion loop)를 설치한다.
- (12) 액위 계측장치는 진동 및 내진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고장 나므로 이러한 계기들은 진동 및 내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견고한 서포트 부근에설치 하여야 하며 진동원에 직접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진동원에 계기를 설치할 때에는 유연 배관(Flexible tubing) 또는 전선관(Conduit)으로 체결하여야한다.
- (13) 배수밸브 사이즈는 DN20 /NPS 3/4 로 액위 계측장치의 바닥 쪽에 설치한다.

#### 5. 액위 계측장치의 설치

# KOSHA GUIDE E - 110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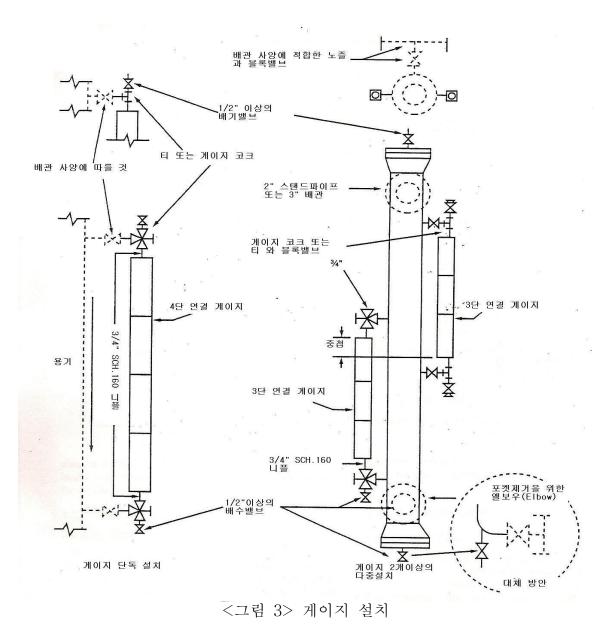
## 5.1 일반형 액위 계측장치의 설치

- (1) 일반형 액위 계측장치는 관 유리액위계, 외장 유리액위계 및 자기 액위계를 말한다.
- (2) 일반형 액위 계측장치의 설치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관 유리액위계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화학물 질이 아닌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.
- (나) 외장 유리액위계는 가장 폭넓게 쓰이는 형태이고, 자기 액위계는 특수한 경우 나 고압 공정에 사용한다.
  - ① 투시 외장 유리액위계는 산성, 부식성 또는 더러운 유체, 고압의 스팀서비스, 액체간 경계면 액위, 그리고 후면으로부터 액위계 유리로 비추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  - ② 반사 외장 유리액위계는 C<sub>4</sub> 와 이보다 무거운 탄화수소 화합물 등과 같이 깨끗한 액체에 사용한다. 다만 유리 게이지 내부에 C<sub>3</sub> 또는 이보다 가벼운 탄화수소 화합물에 용해되지 않는 페인트나 코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C<sub>3</sub> 및 이보다 가벼운 탄화수소 화합물에도 사용할 수 있다.
  - ③ 끓을 수 있는 유체가 포함된 경우 대형 챔버 타입의 반사 또는 투시 외장유리 액위계를 사용한다.
  - ④ 자기 액위계(<그림 2> 참조)는 유체특성상 게이지유리로 하기 힘들거나 독성 가스·인화성 액체가 누출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외장 유리 액위계처럼 보통 차단밸브-플랜지체결로 한다.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힘이 있는 곳(히터와이어, 스팀트레이싱 튜빙 같은 것이 있는 장소)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- (3) 여러 개의 단위게이지를 연결하여 긴 게이지를 만들어 용기에 연결하는 방법은 <그림 3>과 같다.
- (가) 보통 게이지 전체 길이는 4 개의 단위게이지 또는 150 cm(5 ft)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(나) 200 ℃ 이상의 물질에 사용하는 때에는 전체 게이지 길이는 3 개의 단위게이지 이내로 한다. 적용가능 압력은 60 kg<sub>f</sub> /c㎡·G(900 psig)로 제한한다.
- (다) 4 개 이상의 단위게이지를 사용할 때에는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. 열팽창과 열수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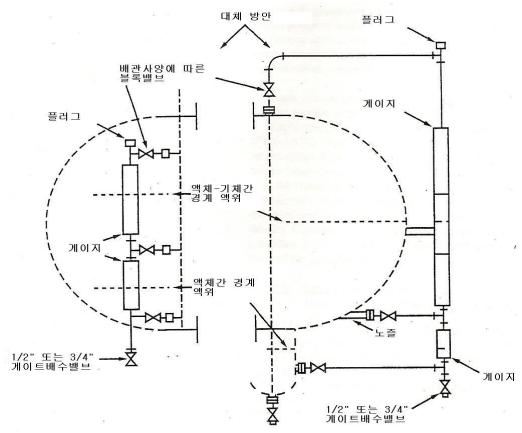
에 따른 보상을 위해 옵셋(Offset) 이나 열팽창 루프(Expansion loop)가 필요하다.



- (4) 액위 측정범위가 넓을 경우 게이지를 아래와 같이 다중 설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.
- (가) 보통 게이지 꼭지연결사이즈는 DN20 /NPS 3/4 이며 용기에 차단밸브-플랜지 노즐체결로 직접연결 시 플랜지 사이즈는 최소 DN25 /NPS 1 이다.
- (나) 유지보수측면에서 자동볼체크 방식의 꼭지밸브 또는 차단밸브와 티(Tee)를 사

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(설치방법은 <그림 3> 참조)

- (다) 용기 안에 경질가스 또는 독성유체가 있어 게이지유리 파손 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경우 과다 유량흐름(Excess-flow) 방지밸브를 용기와 게이지 사이 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유체간 경계면 액위 지시를 위해서는 투시식 게이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 용기의 유체 사이의 경계면, 유체-기체 경계면의 액위 측정을 위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권장 설치방법은 <그림 4>를 참조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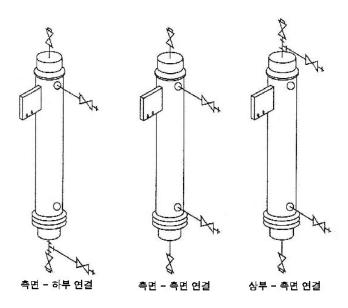
<그림 4> 경계 액위 측정을 위한 게이지 설치

(4) 게이지 유리는 17 kg<sub>f</sub> /c㎡·G(250 psig) 압력의 스팀, 불산(Hydrofluoric acid), 아민(Amine), 부식성 물질 등과 같은 기체, 유체에 의해 손상을 입으므로 유리안쪽에 얇은 보호필름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. 햇빛에 노출된 장소에서는 분광효과가 없는 반사식 게이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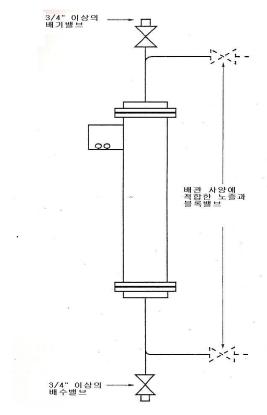
# 5.2 액위 전송기의 설치

- (1) 액위 전송기 설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전자계측기의 전송기 또는 변환기는 고온배관, 용기 또는 다른 장비들에 가까 이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
  - (나) 주변온도가 제조사 제한 온도를 넘는 곳은 교정 장애와 급속한 전자부품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여야한다.
  - (다) 기계적 부품과 전자부품의 진동 민감도를 확인하여 필요하면 진동 최소화를 위한 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라) 액위 전송기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액위 파동이 존재하는 곳에는 제동장치 (Damping)가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.
  - (마) 변위 전송기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   - ① 변위체 자체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고 고점도 물질 같은 경우 변위체에 들러붙어 교정에 영향을 주므로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하며 변위 전송기는 유체퍼지나 열 보상(Heat tracing)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  - ② 유체표면에서 격렬한 비등현상이 있거나 수압공진이 있는 곳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.
    - ③ 변위 전송기는 진공 또는 휘발성 유체 서비스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.
    - ④ 변위 전송기를 -18 ℃ 이하 또는 200 ℃ 이상의 온도를 가진 서비스에 사용할때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단열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용기속의유체는 고온이고 외장 케이지의 온도는 저온일 때에는 밀도 차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설치 시 온도차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   - ⑤ 외장 변위 전송기의 설치를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적합한 노즐, 차단밸브, 배관 피팅을 사용하여 설치한다. <그림 5>, <그림 6> 및 <그림 7> 참조

KOSHA GUIDE E - 110 - 2011



<그림 5> 외장 변위 전송기의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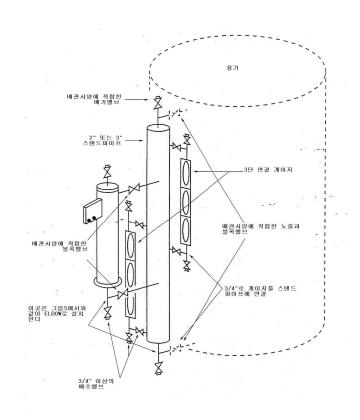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6> 외장 변위 전송기의 스탠드파이프

⑥ 전송기와 제어기는 게이지에 병렬로 설치되어야 한다. 각각의 액위지시계를 위

한 분리된 연결 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- ⑦ 공정에 적용할 때 액위 전송기와 제어기는 DN 40 /NPS 1½ 또는 DN 50 /NPS 2 플랜지 체결을 한다.
- ⑧ 배수밸브는 DN20 /NPS 3/4 이상을 사용하고 배기밸브는 <그림 6>에서와 같이 게이트밸브타입으로 DN 20 /NPS 3/4 이상을 사용한다.
- ⑨ 액위 측정범위가 넓거나 용기연결 개수를 최소화하여 할 때에는 <그림 7>과 같이 스탠드 파이프에 게이지를 다중으로 설치한다. 스탠드파이프는 일반적으로 DN 50 /NPS 2, DN 80 /NPS 3 배관을 사용하여 계기를 기계적으로 받쳐 주고 난류나 거품으로 인한 계기 영향을 막아주는 격동방지실의 역할을 한다.



<그림 7> 외장 변위 전송기의 스탠드파이프를 이용한 다중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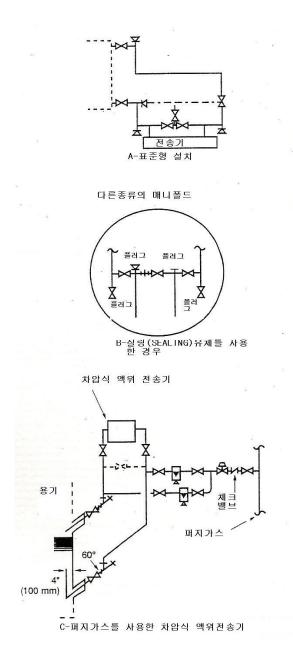
- ① 수평 용기에서 스탠드파이프 사용시 액위 측정범위가 넓거나 다중 설치된 계기 의 무게가 상당할 때에는 필요시 추가 보강을 하여야 한다.
- ① 용기의 노즐 간격은 용기와 제어기간의 팽창도 차이 때문에 매우 중요하므로

E - 110 - 2011

액위 측정범위가 매우 넓을 때에는 변위 전송기 이외의 다른 종류의 계측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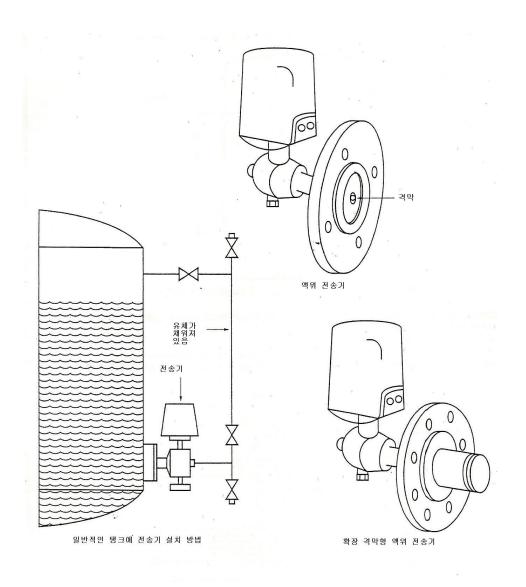
- ② 외장 변위전송기는 스팀 트레이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특히 공장 전체의 비상정지 시에만 분리 가능한 용기에는 내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(바) 차압 전송기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① 저변위 전송기는 액위의 원격 제어, 지시, 또는 기록을 포함한다. 이러한 전송 기는 조절 가능한 측정범위와 높은 경간상승(Span-elevation)과 억제기능을 가진다. 수신기 종류의 지시계는 현장 지시를 위해 전송기 출력단 쪽에 설치된다.
  - ②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재질과 정격의 배관피팅을 사용하거나 DN 15 /NPS 1/2 또는 DN 20 /NPS 3/4 튜빙과 튜빙 피팅을 사용한다. 용기설 치 사이즈는 최소 DN 20 /NPS 3/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  - ③ 전송기는 자체 연결배관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요크(Yoke) 또는 받침대에 설치한다. <그림 8>은 대표적인 설치방법이다. <그림 8>의 A와 같이 전송기의 외부 또는 도입배관에는 일정한 수두가 유지되나 측정부분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응축이 될 수 있더라도 실 포트(Seal pot)는 필요하지 않다.
  - ④ <그림 9>는 플랜지 체결방식으로 전송기를 탱크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다. 이러한 종류의 전송기는 슬러리 또는 끈적한 유체를 측정할 때 유리하다. 필요 시에는 돌출 격막이 사용된다. 부식성 물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격막재 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.
  - ⑤ 수압공진이 있거나 유체표면에서 격렬한 비등현상이 있을 때에는 출력이 제동되고 봉입유체가 비등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차압전송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.

KOSHA GUIDE E - 110 - 2011



<그림 8> 차압 전송기의 설치

⑥ 진공 또는 휘발성 유체 서비스에는 도입배관에 적합한 봉입유체 또는 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 외장 봉입을 사용할 때는 일정한 수두유지와 정확도를 위한 실포트(Seal pot)가 필요하다.



<그림 9> 플랜지 체결 차압 전송기의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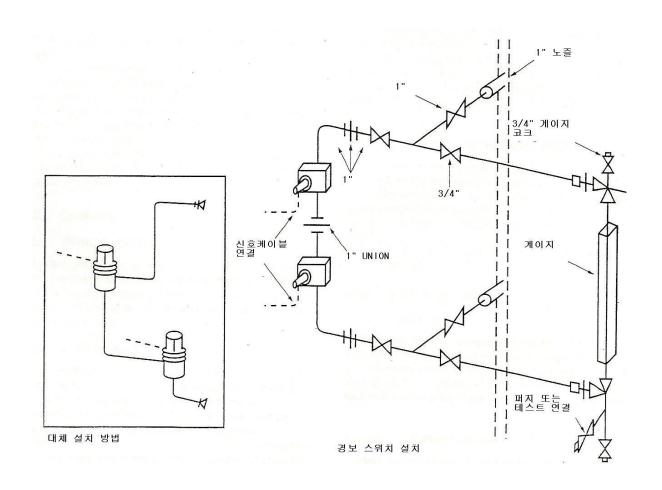
- (사) 방사선 전송기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① 발신기의 설계, 크기, 위치 및 취급은 방사선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국내법규에 따라야 한다.
- ② 사업장에서는 법규 및 안전 절차에 정통한 자격취득자를 고용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발신기의 설계를 검토하여 방화법규, 방사선 장비 사용에 관한 국내 법규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E - 110 - 2011

- (아) 초음파 전송기는 프로세스 압력, 온도의 변화, 상대습도, 가스와 기체의 농도 같은 요인이 초음파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(자) 정전용량 액위 전송기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① 측정소자(Sensing element)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 벽면 또는 내부와 접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절연체 내용물 벽면과 중간부에 모두 적용 시에는 전도체로 만들어진 대항전극 (Counter electrode)이 필요하다.
  - ③ 사용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측정소자의 봉인 설계와 전기, 전자회로의 방폭 또는 본질안전 요구조건 만족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.
  - ④ 내장 측정소자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  - ② 용량집중측판(Concentric Shroud)이 제공되면서 예비교정이 가능한 경우
    - 때 공장이 우전되고 있는 중에도 측정소자의 설치. 제거가 가능한 경우
    - 때 측정소자가 유체, 가스 및 고온촉매의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경우

#### 5.3 액위 스위치의 설치

- 5.3.1 액위 스위치의 설치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액위 스위치 설치시에는 다른 계기와는 분리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.
  - (2) 정전용량식 스위치, 초음파식 스위치와 같은 전자스위치는 <그림 10>과 같이 용기 속 또는 외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.
  - (3) 공기 전송로상의 압력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차단밸브, 테스트용 티(Tee)와 함께 설치한다. 민감한 압력스위치 또는 차압 스위치는 탱크나 용기에 설치할 때 침 전물에 의해 막히지 않는 지점에 설치한다.



<그림 10> 게이지에 병렬로 경보 스위치 설치

## 5.3.2 액위 스위치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스위치 작동이 위험하거나 정기적인 스위치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탱크의 경보 액위 지점에서 배관을 연결하여 센서가 설치된 챔버(Chamber)를 바닥에 가깝게 설치한다.
- (3) 시험을 위하여 실제 유체를 흘려 챔버를 채워본다. 이러한 배치는 사람이 탱크에 올라갈 필요 없이 기능적인 시험을 하게 해준다.
- (4) 부표 또는 변위 액위 전송기는 부표나 변위체를 밀어 올리는 시험 레버가 있어 야 한다. 만약 부표나 변위체가 들러붙었다면 전문가가 처리하기 전까지 레버를 만져서는 아니 된다.